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 양향자의원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68
----------	-------

발의연월일 : 2024. 1. 12.

발 의 자 : 서삼석 · 양향자 · 최형두
윤한홍 · 김예지 · 김성원
장기윤 · 김태호 · 한무경
정동만 · 이달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 · 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 · 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처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해안권의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개발축과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인하여 외부 및 지역 간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하여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남해안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남해안권을 국제

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각종 계획·시책을 종합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재정법」,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마.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해양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수

상레저산업,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국가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우선 지원, 보조율의 인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 남해안권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및 사업시행자 부담 감면을 할 수 있음(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48조).

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안 제49조).

자.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차. 관광진흥지구 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해안권의 지리적·자연적·산업적 여건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안권”이란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중 남해안선에 연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이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 및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광개발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개발 계획,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합개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6.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이란 국내외 투자자 및 입주기업 유치를 위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남해안권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

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 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제6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해양·문화·휴양·스포츠 관광 등 남해안권의 새로운 관광분야 발굴 및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남해안권 소재 섬의 관광개발 등 특화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6. 남해안권의 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8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경상남도지사·부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제49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장(이하 “남해안관광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이하 “관광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지구의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2.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의 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지정 요청 전에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요청받은 남해안관광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제48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남해안관광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9조(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해제)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사항으로 보아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관광진흥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남해안관광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등) ① 관광진흥지구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흙·돌·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흙·돌·자갈의 채취 또는 죽목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관광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3. 관광개발사업 시행자 및 관광개발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지구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8.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관광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 지역에서 관광진흥지구 지정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

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0.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13조(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안관광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6.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지구 개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남해안관광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관광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단계별 관광개발 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개발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2.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제48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남해안관광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심의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남해안관광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계획에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개발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④ 남해안관광청장이 통합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다.

제16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종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광진흥지구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종합심의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관광청장은 종합심의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종합심의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교통·재해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남해안관광청장에게 종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의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승인 관련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지정·결정·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관광개발사업의 준공 시까지로 한다)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
가
- 21.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
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
墓)의 개장허가
- 2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 2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 또는 신고
-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35.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36.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인·허가 등의 의제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관광진흥지구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이와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광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관광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남해안관광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한다.

④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남해안관광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관광진흥지구 내 개발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관광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

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개발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광진흥지구 내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관광진흥지구의 비율과 그 공급 절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권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기업의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제1절 법률 적용의 특례

제25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산림청장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의 특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연공원법」 적용의 특례) 환경부장관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의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제2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관광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관광진흥지구

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0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지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국·내외 기업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및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폐교재산의 활용) ① 남해안권에 소재한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국가재정법」 적용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출입국관리법」 적용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남해안관광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지구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과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营业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를 말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허가절차 및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제2절 관광산업의 지원

제36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과 어촌·어업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휴양·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에서의 수상레저활동(「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연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생산 지원)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문화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권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의 우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사업이 관광진흥지구에서 우

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남해안권 섬 관광 활성화)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소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2조(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활성화)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남해안권 지역축제를 남해안 해양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남해안 해양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재정지원 등

제44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는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지구 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44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남해안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관광진흥지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기구

제48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위원회(이하 “남해안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남해안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53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남해안관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남해안관광청장

3. 시·도지사

4.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해안관광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어업·환경·해양·도시·문화·관광·휴양·스포츠·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남해안권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남해안관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49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이하 “남해안관광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그 밖에 남해안관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이하 “남해안관광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해안관광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남해안관광청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업무)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7. 제5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총괄·조정

9. 제63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및 제64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해안관광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진흥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장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

제53조(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의 설치) ① 남해안권 관광진

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남해안관광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
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54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관광진흥지구 내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3. 제3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용
4. 남해안관광청의 운영비
5.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5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⑤ 남해안관광청장은 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장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58조(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 지정)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관광진흥지

구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권 투자진흥구역(이하 “투자진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구역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구역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③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투자진흥구역의 지정 해제)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안관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

여 그 기준을 갯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투자진흥구역의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구역의 국내외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투자진흥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매입비의 융자, 고용 및 고용훈련 보조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투자진흥지구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

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과건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과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63조(관광진흥지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지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광진흥지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4조(남해안권 관광 통계의 작성)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남해안권 관광 통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남해안권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시

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 통계를 1년마다 작성하되, 남해안권 관광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남해안권 관광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감독) ① 남해안관광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광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야 한다.

② 남해안관광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남해안관광청장은 이 법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1항에 따른 남해안관광청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안관광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 사업이 이 법 제6조에 따른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관광진흥지구 및 개발계획으로 지정·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244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 제7조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